

『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소하천정비법」 등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,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마련으로 시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점용료등의 미부과 기준 정비(안 제2조)
 - 당초 : 600원 미만 점용료등 미부과
 - 변경 : 2,000원 미만 점용료등 미부과
- 「소하천정비법」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2조)
 - 당초 : 부당이득금
 - 변경 : 변상금
- 점용료등 산정기준 및 조정산식 정비(안 별표 1, 별표 3)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소하천정비법」, 「지방세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- 본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
 - 상위법인 「소하천정비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점용료등 산정기준 및 조정산식을 정비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.